

## 2040<sup>+</sup>저축예금 특약

### 제1조 【적용범위】

2040+ α 저축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제한이 없으나 1인 1계좌에 한한다.

### 제4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 제6조 【기본이율】

신규 가입일 현재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되,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 고시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7조 【우대이율】

- ① 다음 항목별 우대금리 표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1.0%p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항 목	고객군별 우대금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1. 급여이체 시	0.3	-	-	-
2.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	0.3	0.3	0.3	0.3
3.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시	-	0.2	0.2	0.2
4.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시	-	0.2	0.2	-
5. 아파트 관리비 모계좌 약정 시	-	-	-	0.2
6.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 시	0.3	0.3	0.3	0.3

7.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 시	0.1	0.1	0.1	0.1
8. 우체국 체크 및 제휴(체크, 신용)카드 발급 시	0.2	0.2	0.2	0.2
9.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0.1	0.1	0.1	0.1

- ②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의해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게시한다.

### 제8조 【이율적용방식】

-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매 결산일(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 12월 말일)에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② 우대이율은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우대이율 조건을 재확인하여 약정 및 거래실적에 따라 변동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 급여이체는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으로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이체’ 또는 ‘급여이체약정 후 5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실적과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분
  -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은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으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으며 이용 실적이 있는 분
  -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아파트관리비 모계좌 약정은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으로 해당 모계좌 약정이 되어 있는 분
  -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은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으로 ‘공공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우체국 창구에서 약정한 자동이체’ 또는 ‘우체국 적금 또는 보험 가입시 약정한 자동이체’ 중 2건 이상을 약정한 분
  - 우체국 체크카드 및 제휴(체크 또는 신용)카드 발급은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여 발급된 우체국 체크카드 및 제휴(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분
  -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은 매 결산일 현재 우수고객인 분

### 제9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에 통장원장에 입금한다.

### 제10조 【이자계산】

-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은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로 하되, 12월은 말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정기이자율은 적수 누계액 × 이율(%) / 365로 계산한다.

**제11조 【우대서비스 제공】**

- ① 이 예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입대상별 예금거래 실적에 따라 차등 제공된다.
- ② 급여이체 약정을 한 개인고객은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기준에 해당하는 우대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제공한다.
  1.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급여우대 서비스 적용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익월 5일부터 익익월 4일까지 우대서비스 적용
  2. 급여이체 약정일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조건에 상관없이 우대서비스 제공
  3.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우대 서비스 제도를 따라 적용함
- 4. 우대서비스 내용

구 분		우대서비스
수수료 면 제	우체국간 송금수수료 (급여계좌를 통한 거래에 한함)	전액 면제
	인터넷·폰·모바일(IC칩/VM)뱅킹 타행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CD/ATM 이용수수료 (우체국기기에서 시간의 현금인출, 우체국간 계좌이체·CMS·가상계좌 이체에 한함)	전액 면제
	현금IC / ONE Plus 카드 발급	전액 면제
	통장 재발행	전액 면제
	자기앞수표 발행	전액 면제
	제증명서 발급	전액 면제
금리우대	2040 <sup>4a</sup> 자유적금	0.1%
	2040 <sup>4a</sup> 정기예금	0.1%
	챔피언정기예금	가입기간별 0.05%~0.15%
	퇴직금담보 계좌대월 금리	최고 0.2%

- ③ 급여이체를 약정한 모계좌에서 급여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펌뱅킹 이용수수료가 면제이며,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우대서비스 제도를 따라 적용한다.
- ④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월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월평균 잔액을 산정하여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익월 5일부터 익익월 4일까지 우대서비스 제공
  2. 신규 가입일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실적에 상관없이 우대서비스 제공
  3. 부가서비스의 적용기준 및 우대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우대서비스 내용

수수료 면제	대상별 우대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고객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우체국간 송금수수료 (2040+a저축예금 계좌를 통한 거래에 한함)	전액 면제	전액 면제
인터넷·폰·모바일(IC칩/VM)뱅킹 타행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월 10회 면제
CD/ATM 이용수수료 (우체국기기에서 시간의 현금인출, 우체국간 계좌이체·CMS·가상계좌 이체에 한함)	전액 면제	전액 면제
현금IC / ONE Plus 카드 발급	전액 면제	전액 면제
통장 재발행(2040+a저축예금 계좌에 한함)	전액 면제	전액 면제
자기앞수표 발행	전액 면제	전액 면제
제증명서 발급	전액 면제	전액 면제

**제12조 【기타】**

이 예금은 개인에 한하여 계좌대월 약정이 가능하다.

**부 칙**

① 이 특약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우대이율) 1항의 8호(우체국 체크 및 제휴<체크, 신용>카드 발급 시)는 우체국 체크카드 출시일부터 시행한다

**< 신규대조문 >**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예금의 성격)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u>제2조(예금종류)</u>  <b>좌 동</b>	용어정리																				
제7조 (우대이율)  ① 다음 항목별 우대금리 표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1.0%p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항 목</th> </tr> </thead> <tbody> <tr><td>1. 급여이체 시</td></tr> <tr><td>2.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td></tr> <tr><td>3.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시</td></tr> <tr><td>4.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시</td></tr> <tr><td>5. 아파트 관리비 모계좌 약정 시</td></tr> <tr><td>6.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 시</td></tr> <tr><td>7.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 시</td></tr> <tr><td>8. 우체국 제휴(체크, 신용카드) 발급 시</td></tr> <tr><td>9.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td></tr> </tbody> </table>	항 목	1. 급여이체 시	2.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	3.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시	4.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시	5. 아파트 관리비 모계좌 약정 시	6.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 시	7.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 시	8. 우체국 제휴(체크, 신용카드) 발급 시	9.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제7조 (우대이율)  ①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항 목</th> </tr> </thead> <tbody> <tr><td>1. 급여이체 시</td></tr> <tr><td>2.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td></tr> <tr><td>3.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시</td></tr> <tr><td>4.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시</td></tr> <tr><td>5. 아파트 관리비 모계좌 약정 시</td></tr> <tr><td>6.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 시</td></tr> <tr><td>7.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 시</td></tr> <tr><td>8. <u>우체국 체크 및 제휴(체크, 신용카드) 발급 시</u></td></tr> <tr><td>9.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td></tr> </tbody> </table>	항 목	1. 급여이체 시	2.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	3.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시	4.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시	5. 아파트 관리비 모계좌 약정 시	6.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 시	7.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 시	8. <u>우체국 체크 및 제휴(체크, 신용카드) 발급 시</u>	9.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상품정비 반 영
항 목																						
1. 급여이체 시																						
2.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																						
3.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시																						
4.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시																						
5. 아파트 관리비 모계좌 약정 시																						
6.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 시																						
7.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 시																						
8. 우체국 제휴(체크, 신용카드) 발급 시																						
9.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항 목																						
1. 급여이체 시																						
2.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																						
3.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시																						
4.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시																						
5. 아파트 관리비 모계좌 약정 시																						
6.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 시																						
7.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 시																						
8. <u>우체국 체크 및 제휴(체크, 신용카드) 발급 시</u>																						
9.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제8조(이율적용방식)  5. 우체국 제휴카드 발급은 매 결산일 현재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여 발급된 우체국 <u>제휴(체크 또는 신용)카드</u> 를 발급받은 분	제8조(이율적용방식)  5. ----- <u>체크카드 및 제휴(체크 또는 신용)카드 발급은</u> ----- ----- <u>체크카드 및 제휴(체크 또는 신용)카드를</u> ----- -----	상품정비 반 영																				
제9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정기이자 계산 기준일 <u>익일</u> 에 통장원장에 기산한다.	제9조(이자지급방식)  ----- ----- <u>다음날</u> ----- <u>입금</u> 한다.	용어정리																				
	<b>부 칙</b>																					

현 행	개 정 안	비고
	이 특약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우대이율) 제1항 8호(우체국 체크 및 제휴(체크, 신용카드) 발급 시)는 우체국 체크카드 출시일 부터 시행한다.	